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30

발의연월일: 2020. 12. 24.

발 의 자:김영호·김승남·김홍걸

남인순・송재호・신정훈

안민석·양경숙·야진비

주철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감리자는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는지 또는 건축자재가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수행상황을 사업계획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감리자가 법에 규정된 감리자의 업무를 위반하여 감리를 함으로써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며, 사업계획승인권자 등에게 업무수행 상황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업무 수행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시공자·사업주체 등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7일 이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

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리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 시공자·사업주체 등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주택 감리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택건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감리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3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감리자가 제44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였을 때부터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6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106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③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 <신 설></u>	3의2. 제44조제3항에 따른 보고
	를 하지 아니한 감리자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